

## 議案檢討報告書

1. 發意 또는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2. 件 名 : 大清湖 特別 對策 地域內 環境 基礎 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의 件
3. 案 件 要 旨 : 別 添 參 照
4. 檢 討 意 見 : 別 添 參 照

위 議案에 대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2. 12.

文教・社會委員會

專門委員 金鎮鎬



大清湖 特別對策 地域內環境基礎 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의 件

## 檢 討 報 告 書

1992年 12月 日

文教・社會 委員會  
專 門 委 員

大清湖 特別對策 地域內 環境 基礎 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의 件

## 檢 討 報 告

이 協約書 同意의 件은 1992年 12月 11日 大田直轄市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1992年 12月 12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음.

### 1. 提 案 理 由

- 大清湖 上水源 水質改善을 위하여 環境政策基本法 第 22條에 依據 指定告示된 忠淸北道 大淸湖 特別對策地域內에 設置되는 環境 基礎施設의 維持管理 所要費用을 水道法 第 7條에 根據 3個 市·道間(大田直轄市, 忠淸南道, 忠淸北道)에 協約을 締結 하여 分擔코자 함.

### 2. 主 要 骨 子

- 協約 機關 : 大田直轄市, 忠淸南道, 忠淸北道
- 費用分擔對象 :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運營하는 大淸湖 特別對策地域內의 汚廢水處理施設의 運營費
  - └ 下水終末處理場
  - └ 簡易污水處理場
  - └ 畜產廢水 共同處理場
- 費用分擔比率 : 原水 分擔比率 및 財政自立度를 50%適用 分擔
  - 大田直轄市 分擔額(년간) : 1,062백만원(52.2%)
  - 原水配分比率 및 地方財政自立度는 2年마다 相互協議 調整
- ※ 協約(案) : 全文 10조, 附則 2조(別添)

### 3. 關聯 參考 事項

- 大清湖 特別對策地域 指定 現況

- 指 定 : 90. 7. 19 (環境處)
- 面 積 : 729km<sup>2</sup>(忠北 666km<sup>2</sup>, 大田 63km<sup>2</sup>)
- 根 據 : 環境政策基本法 제22조

- 環境基礎施設 設置 現況

施設名	施設數 (個所)	事業費 (百萬원)	運營費 (百萬원)	地 域
計	7	20,181	2,034	忠清北道 3個郡
下水處理場	2	18,382	1,764	· 청원 1 · 옥천 1
小規模 下水處理場	5	1,799	270	· 청원 1, 보은 1 · 옥천 3

- 事業費는 國庫(70%)와 地方費(30%) 負擔

- 自治團體 運營費 負擔額

區 分	原水使用比率 ( % )	財政自立道 ( % )	分擔比率 ( % )	年間 負擔額 ( 百萬원 )
計	100	100	100	2,034
受 益 者	小 計	99.4	84.1	1,866
	大田直轄市	63.8	40.6	1,062
	忠清南道	16.8	21.6	390
	忠清北道	18.8	21.9	414
忠 北 3 個 郡 ( 原因者 )	0.6	15.9	8.3	168

#### 4. 檢討意見

○ 本案件은 大清湖 水質改善을 위하여 大清湖 特別 對策地域內에 設置되는 環境基礎施設의 維持管理 費用을 해당 地方自治團體간 共同分擔키로 協約을 締結함에 있어 地方自治法 第35條의 規定에 따라 當 議會의 同意를 구하려는 内容이 되겠음.

○ 먼저 本 協約 締結 推進 經過에 대하여 簡略하게 報告드리겠습니다.

政府에서는 맑은물 供給을 위하여 우리나라 最大의 광역上水源인 大清湖와 팔당호 周邊을 上水源 水質保全 特別 對策地區로 指定('92. 7. 19. 環境處 告示 第 90-15號)하고 이 地域안에서의 各種 開發行爲등을 强力 抑制함은 물론 下水終末處理場, 畜產廢水 處理場等 環境 基礎施設의 建設에도 主力하였습니다.

그結果 特別對策地域內 主要地點에 상당수의 環境基礎施設이 建設되거나 建設이 推進되는등 上水源 水質保全에 대한 政府의 積極的인 意志를 보여주었음.

그러나 이러한 環境基礎施設의 運營費負擔에 관하여는 깨끗한 環境保全을 責任져야 中央政府와 關聯 施設을 保有하고 있는

地方自治團體(污染者), 上水源을 使用하는 地方自治團體(受惠者)간에 利害關係가 상충되어 合意點을 찾지 못하였던 바, 각기 主張內容을 要略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中央政府 : 環境基礎施設 設置에 所要되는 費用을 負擔(70%) 하였으므로 이의 運營에 所要되는 經費는 國家財政 形便상 負擔이 어려우니 汚染者와 受惠者등 關聯 地方自治團體간에 協議에 의하여 解決해야될 問題임.
- 汚染者 : 上水源 保護에 따른 各種規制 등으로 開發의 制限되는 등 關聯 地域住民의 不滿이 高潮되고 있으며 또한 環境 基礎施設의 運營에 따라 깨끗해진 물은 결국 廣域自治團體(受惠者)가 惠澤을 보게되며 地方財政의 形便으로도 負擔이 어려움.
- 受惠者 : 環境問題는 基本的으로 原因者が 責任이 있으며, 原水대를 負擔하고 있으므로 環境 基礎施設 運營費의 負擔은 2중으로 負擔하는 結果임. 또한 受惠者도 下水處理를 위하여 莫大한 豫算을 投入하고 있음.  
따라서 原因者が 1次적으로 責任을 지고 負擔을 하여야하나 地方財政形便上 어려울 경우 國庫支援이 바람직함.
- 韓國水資源公社 : 現在 받고 있는 원수대는 赤字임. 따라서 環境 基礎施設의 運營費를 負擔할 경우 원수대를大幅 引上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經濟波及效果가 憂慮됨.

이러한 각자의 立場을 調整하기 위하여 1990. 9. 26부터 1992. 11. 25까지 10차례에 걸친 中央政府 主管하에 協議를 繼續하였

는바 결국 國土開發研究院(K.D.I)의 用役結果에 따른 汚染者와 受惠者간의 共同 負擔原則에 合意하고 本 協約案을 締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다음은 협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本 協約締結의 目的과 遵守義務를 案 第1條와 2條에서 規定하고 있는바 環境基礎施設의 運營, 管理에 所要되는

費用을 分擔함에 있어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면 該當 地方自治團體는 本 協約을 誠實히 遵守할 義務를

지며 環境基礎施設 運營 主體인 忠清北道 知事는 大清湖 水質改善을 위하여 最善의 努力を 하여야한다 라고 遵守義務를 規定하고 있음.

그러나 遵守義務 規定에 대하여는 漠然한 原則의인 事項만을 規定한 것으로써 經費를 分擔하는 地方自治團體에서는 의당

本經費 分擔에 따른 施設稼動의 適正性 與否를 確認할 權利가 주어졌다 할 것이므로 放流水 水質検査등 施設稼動의 適正

性與否를 確認할 수 있는 制度의 名文規定이 있어야 할 것으로思料됨.

둘째, 費用 分擔 對象施設의 範圍에 관한 內容으로써 費用分擔對象施設을 大清湖 水質保護 特別對策地域안에 設置된 下水

處理施設, 簡易污水處理施設, 畜產廢水 處理施設 및 畜產廢水共同處理施設등이 되겠으나 本 協約에 따라 '93年度에 負擔하

여야 할 施設은 下水處理施設 2個所, 簡易污水 處理施設 5個所 등 總 7個所가 되겠음.

셋째, 運營費 總額의 算定基準에 대한 內容을 案 第4條에서 規定하고 있는바

運營費 總額의 算定은 忠清北道知事が 각 施設별로 所要되는人件費, 電力費, 藥品費等 諸般經費를 算出하여 算定하되 1

會計年度 單位로 算定하며 該當自治團體간 相互協議에 의하여確定토록 하고 있음.

넷째, 運營費의 分擔費率에 관한 内容으로써 運營費의 分擔은 受惠者와 汚染者 사이의 費用 分擔 基本要素인 受惠程度(原水 使用量), 負擔能力(財政 自立度), 汚染度 및 機會費用을 充實히 反映하므로써 最適이라고 判斷된 國土開發 研究院 用役結果 第4案이 採擇되었는 바, 大田直轄市의 分擔比率은 算定된 運營, 管理費 總額의 52.2%가 되겠음.

그러나 이러한 基準은 環境政策基本法 第 7條에 明示하고 있는 汚染源因者 費用負擔 責任原則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써 비록 汚染者 측의 財政形便상 한시적으로 適用하는 불가피한 措置라 하나 環境保全에 관한 問題를 繼續하여 大清湖와 팔당호로만 局限 시킬 수는 없을 것이므로 環境政策 基本法에 立脚한 費用 負擔이 充實히 履行될 수 있는 方案이 研究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섯째, 分擔額의 納付, 豫算編成, 精算등에 관한 内容으로써 分擔額의 納付는 本 運營, 管理費를 別途로 管理하기 위하여 設置된 特別會計에 每 分期 初月 以前까지 4회에 걸쳐 分納토록 하고 있으며 忠淸北道知事는 執行內譯과 精算內譯을 作成하여 每年 12月31日까지 大田直轄市長 및 忠淸南道知事에게 通報토록 하고 있음.

여섯째, 分擔比率의 재 調整에 관한 内容으로써 分擔比率의 基準이 되는 原水配分量 및 地方財政自立度를 每 2年마다 相互 協議에 의해 재조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人口增加, 地方財政 與件 變化등에 따라 發生될 수 있는 變動要因을 合理的으로

調整키 위한 것으로써 關聯自治團體간 協議가 成立되지 않을 시  
는 地方自治法 第 140條의 規定에 따라 內務部長官에게 調整  
要請토록 하고 있음.

일곱째, 本 協約書에 規定되지 않은 事項에 대하여는 각 自治  
團體간 協議에 의하여 決定토록 하고 있으며 其他 '92年度 中

施設稼動에 대한 運營費에 대하여는 優先 該當 自治團體의豫  
算으로充當하며 '93년도에 이를 納付토록 附則으로 規定하고  
있음.

- 以上에서 報告드린바와 같이 本 協約書 同意에 관한 件은 최근  
에 이르러 環境 保全 問題가 단순히 快適한 環境을 保全한다

는 次元을 넘어선 우리의 生存權과 直決된 重大한 問題로 대두  
되고 있는 現 時点에서 불가피한 措置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協約書 締結 過程에서 與論된 다음과 같은 問題點도 看  
過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協議 過程에서 提起된 主要 問題點을 報告 드리면

첫째, 受惠者 負擔에 대한 法的根據 未洽입니다.

우리나라 環境保存에 대한 事項을 基本적으로 規定하고 있는  
環境政策 基本法은 汚染原因者가 그費用을 負擔토록 責任限界

를 分明히 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地方自治團  
體간 意見이 相衡되자 水道法을 改正하여 受惠者도 그 費用을

分擔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本 環境 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件이 비단 大清湖와 팔당호에 국한되어 있는 問題만이 아  
닌대부분의 上水源이 數個의 地方自治團體에 걸쳐 있음을

勘案할때 彌縫策에 不過하다 할 수 있으므로 環境政策의 基本原則인 環境政策 基本法 第 7條에 의한 汚染者 負擔原則이 履行될 수 있는 制度的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受惠者 分擔에 따른 公平性 缺如입니다.

일명 受惠者로 指稱되고 있는 當市에서도 水質改善을 위하여 自體의인 下水處理施設을 稼動하는등 많은 豫算을 投入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原因者 · 受惠者 共同 分擔의 原則이라는 論理라면 이에 相應하는 費用을 錦江下流地域의 地方自治團體로부터

터 받아야 마땅할 것이며, 또한 原水 使用에 있어서도 費用을 支拂하고 使用하고 있으므로 環境 基礎施設의 運營費까지 分擔

한다함은 二重, 三重의 負擔이라 할 수 있으며 가뜩이나 地方財政自立度가 貧弱한 地方自治團體에 環境基礎施設 運營費를

負擔케 함으로써 地方自治團體간에 葛藤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광역 上水源의 水資源 管理는 국가가 擔當하는 方案이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料됩니다.

- 以上과 같은 事項을 綜合檢討하여 볼 때 本 大清湖 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관한 事項은 지난 90年 9月

부터 92年 11月까지 2년여에 걸친 長期間의 協議끝에 到達된 結論으로써 當市에서도 收容할 수 밖에 없는 立場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費用 負擔의 限界設定등 보다 더 根本的인 問題解決에 많은 研究와 努力이 있어야 할 것으로 料됩니다.